

JPE 논문심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력전자학회 Journal of Power Electronics(이하 JPE)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논문은 JPE 온라인논문심사시스템에서 접수를 받는다. 사무국에서는 접수된 논문의 형식 및 투고요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논문을 Editor-in-Chief에게 전달하고, Editor-in-Chief는 저자의 희망 투고 분야에 따라 담당 Editor를 배정한다.

제3조(적합성 평가) 담당 Editor는 접수 논문이 투고 요령 및 연구윤리 규정 등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 후, 그 조건이 미비하거나 주제가 투고 분야와 적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기하여 Editor-in-Chief 명의로 교신저자에게 “Reject without review” (게재 불가) 판정을 심사결과로 통보한다.

제4조(Associate Editor 배정) Editor는 심사회부 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하여 담당 Associate Editor를 배정한다.

제5조(심사위원 선정) 담당 Associate Editor는 최소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선정은 원칙적으로 2개국 이상 분포하도록 한다.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은 저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한다.

제6조(심사보고서) ① Associate Editor는 심사위원이 규정된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심사는 심사 위원 배정 후 14일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수정본 심사 시에도 동일한 기한을 적용한다.

②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 담당 Associate Editor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려한다.

③ 심사위원의 심사가 부실할 경우, Associate Editor는 보완을 요청하여 심사보고서를 다시 제출받도록 한다.

제7조(AE 심사판정) 담당 Associate Editor는 논문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판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담당 Editor에게 보고한다. 심사결과는 다음 중 하나로 판정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Accept”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한다.

② “Accept but needs final editing”로 판정된 논문은 영문 및 다른 요소를 보강하여 Managing Editor에게 재심사를 받는다.

③ “Major Revisions” 및 “Minor Revisions”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보완한 후 투고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 심사위원 혹은 새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받는다.

④ “Revise before review”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 시작 전 Editor 혹은 Associate Editor가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보완한 후 다시 제출하여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⑤ “Reject after review”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JPE에 게재하지 아니

한다.

- ⑥ “Reject without review”로 판정된 논문은 Editor 혹은 Associate Editor의 심사 결과 JPE에 게재하지 아니한다.
- ⑦ “Reject, do not transfer”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JPE에 게재하지 아니하며 Springer Transfer Desk에 전달치 아니한다.

제8조(Editor 심사판정) 담당 Editor는 심사위원의 의견과 담당 Associate Editor의 판정을 참고하여 판정을 한 후 그 결과를 Editor-in-Chief에게 보고한다.

제9조(판정결과 통보) Editor-in-Chief는 심사판정결과를 교신저자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10조(심사제한) 투고된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린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Editor-in-Chief가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Publication Editor 중 1인을 Co-Editor-in-Chief로 지정하여 Editor-in-Chief의 역할을 대행토록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주선) 담당 Associate Editor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질의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주선해야 한다.

제12조(이의심사 절차) 심사결과에 대한 교신저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담당 Editor가 검토 후 담당 Associate Editor에게 조사를 의뢰해야한다. Associate Editor는 논문이 규정에 맞게 심사가 되었는지 논문 및 심사자 의견 전반을 검토한 후, 결과를 Editor에게 통보해야한다. 검토결과는 Editor-in-Chief의 명의로 교신저자에게 전달한다.

제13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 사항은 JPE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9년 1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